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전주)2017누116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46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7.

판 결 선 고 2017.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분 재산세 100,923,910원 및 지방교육세 11,873,400원의 합계 112,797,310원의 부과처분을, 2013년분 재산세 127,482,840원 및 지방교육세 14,997,980원의 합계 142,480,820원의 부과처분을, 2014년분 재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142,355,840원 및 지방교육세 16,747,740원의 합계 159,103,5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지방세법"부터 제22행의 "할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09조 제2항 단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그 재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대가의 명목이나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세 및 공과금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 16행의 "보일 뿐이고,"부터 제18행의 "보기는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부담하기로 한 조세 및 공과금으로 밝혀진 것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것이다)가 유일하고, 설령 사용승낙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과금이 농촌진흥청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농촌진흥청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redacted]진흥청이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제10조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송호철

판사 유상호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